# 남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한송연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75

발의연월일: 2025. 4. 4.

발 의 자 : 한송연, 이경숙, 김현택,

손정자, 박윤옥, 전혜연,

김상수, 이수런, 김동훈,

원주영, 이진환, 김영실,

박경원

#### 1. 제안 이유

공중화장실의 이용빈도와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청소 횟수를 조정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모자 함

### 2. 주요 내용

가. 공중화장실 사용빈도에 따른 청소 횟수 조정 사항 추가 (안 제10조제1호)

3. 개정조례안 : 덧붙임

4. 신·구조문대비표: 덧붙임

5. 비용추계서 : 덧붙임

### 6. 관계법령 발췌서

가.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, 제8조

나.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조

남양주시 조례 제 호

# 남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남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0조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사용빈도를 고려하여 청소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공중화장실의 유지·관리)	제10조(공중화장실의 유지·관리)
공중화장실을 설치·관리하는 자	
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	
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	
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	
다.	<b>.</b>
1. 1일 3회 이상 청소할 <u>것</u>	1 <u>다</u>
	만, 사용빈도를 고려하여 청소
	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.
2.・3. (생 략)	2.・3. (현행과 같음)

### 비용추계 자료

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 1. 제정 수반 요인 및 관련조문

- 가. 자치법규안명
  - 남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- 나. 재정 수반 요인
  - 신설 단서조항 추가
  - 제10조(공중화장실의 유지·관리) 공중화장실을 설치·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.
    - (기존) 1. 1일 3회 이상 청소할 것.

(단서조항 추가) 1. 1일 3회 이상 청소할 것. <u>다만, 사용빈도를 고려</u> 하여 청소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.

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1호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## 3. 미첨부 사유

- 기존 조례에 따라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현행화 및 구체화하는 것으로 청소 횟수를 조정함으로써, 추가적인 예산은 수반되지 않음.
- 현재 남양주시 공중화장실 142개소를 청소용역하여 1일 426회 이상 청소 의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청소 인건비 및 용역비 절감 효과가 예상됨.

### 4. 작성자

남양주시 환경정책과장 김정태

## 임 관계법령 발췌서

#### ☑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

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편익 증진, 위생수준 향상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·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- 제8조(공중화장실의 관리) ①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·관리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(이하 "공중화장실 관리인"이라 한다)을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  - ②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과 그 주변의 청결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- ③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# ☑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- 제7조(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)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관리인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하고, 입구에 관리인의 연락처를 게시할 것
  - 2. 악취의 발산과 파리·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·번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 이상,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할 것
  - 3.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휴지통을 두지 아니할 것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지통을 둘 수 있다.
  - 가.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가 설치된 경우
  - 나.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가 설치된 경우
  - 4. 여성용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위생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수거함 등을 둘 것. 다만, 어린이만 사용하는 경우 등 이용자의 특성상 위생용품 수거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위생용품 수거함 등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.

- 5. 청소 또는 보수 등을 위하여 남성 관리인이 여성화장실을, 여성 관리인이 남성화장실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화장실 입구에 청소 또는 보수 중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두어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할 것
- 6. 그 밖에 특별자치시, 특별자치도, 시・군 또는 구(구는 자치구를 말하며, 이하 "시・군・구"라 한다)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